

서울고등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나20200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나202002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1 선고 2016가합549023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궁화

담당변호사 조영도

피고, 피항소인1.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C의 관리인 D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AH(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C)

2.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조원준, 권문규

변론 종결2019. 9. 20.

판결 선고2019. 10. 18.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1. 선고 2016가합54902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1) 원고에게 838,302,54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30.부터 이 사건 2019. 5. 31.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 부분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① 주위적으로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② 제1 예비적으로 불확정기한의 도래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③ 제2 예비적으로 후발적 불능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각각 구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① 제1심에서의 주위적 청구와 제2 예비적 청구를 전부 취하하였고, ② 제1심에서의 제1 예비적 청구에 대한 청구원인을 불확정기한의 도래에 따른 정산금 채권의 발생에서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 채권의 발생으로 변경하면서2) 그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와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과 제1 예비적 청구 중 감축된 청구를 초과하는 청구에 관한 부분은 실효되었다).3)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 (1)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A(다음부터 제1심 공동원고의 소송상 지위는 따로 적지 않는다)은 골프장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F(다음부터 'F'라 한다)의 주주이다. F는 2005년경부터 국유지인 분할 전 충북 음성군 J, K, L 임야를 포함하여 I리 일대에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다음부터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 (2) 피고 주식회사 AH는 관광레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호가 '주식회사 C'였다가

2019. 2. 22.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다음부터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회사'라 한다). 피고 회사는 2015.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99호로 회생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피고 회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5. 5. 15.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고 피고 회사의 관리인으로 D를 선임하였다가 2018. 11. 21.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였다.4) (3) 피고 E는 피고 회사 등을 계열사로 하는 기업집단인 G그룹의 전 회장이자 최대 주주인 H의 아들이로서 AI의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 A 및 F와 피고들의 계약 체결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인접한 골프장을 인수하여 시설을 확충하고 그 인근에 스키장과 콘도를 건설하여 리조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1997년경부터 토목공사 등을 진행하였는데, 2009년경에 이르러 F와 사이에 사업부지 확보 등 이 사건 사업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다.

(2) F는 2009. 3. 24. 피고들과 주식회사 M 및 H를 상대로 하여 이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사업을 불법적으로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청구로서 손해배상금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32886호). 그 제1심 법원은 2009. 11. 13. F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F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09나11991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10. 14. 항소가 기각되었다.

(3) 원고와 A 및 F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되자 ①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던 충북 음성군 N 전 3,074㎡ 등 26필지 토지와 AJ 대 660㎡ 지상에 있는 1동 건물(다음부터 통칭하여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이라 한다) 및 F 발행 주식 330,000주(다음부터 '이 사건 계쟁 주식'이라 한다)를 피고들에게 매도하되, ② 이 사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민원 해결', '인·허가', '국유지 매수 및 사유지 매입' 업무(다음부터 통칭하여 '이 사건 용역업무'라 한다)를 A의 주도 아래 원고 측에서 수행하고 그 대가를 이 사건 계쟁 부동산과 주식의 매매대금과 함께 받음으로써 이 사건 사업 추진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자 하였다.

(4) 원고, A, F 및 피고들은 2011. 2. 14. 이 사건 계쟁 부동산과 주식의 매매 등에 관한 양해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들은 양해각서가 작성된 당일 원고 측에 이행보증금 4,7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5) 원고, A, F 및 피고들은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2011. 6.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최종 체결하였다.

●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5,845,460,000원(건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으로 한다(제1조 제2항). F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수령하는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F의 A에 대한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제1조 제3항).

● 이 사건 계쟁 주식의 매매대금은 1,650,000,000원으로 하고, 그중 원고가 보유한 주식의 매매대금은 755,000,000원으로 한다(제2조 제3항, 별지 2.1).

● 이 사건 계약상 부동산거래종결이라 함은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확정적으로 완료하는 것(또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받는 것)을 말하고, 주식거래종결이라 함은 이 사건 계쟁 주식의 양도 및 명의개서 등이 사건 계쟁 주식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확정적으로 완료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종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쟁 부동산과 주식 매매대금의 정산 지급은 별지 4.5(c)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제4조 제2항).

●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부동산 매매대금과 주식 매매대금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제4조 제5항).

(a) 매수인이 양해각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매도인에게 지급한 이행보증금은 이 사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본건 거래의 계약금으로 전환된다.

(b) 부동산거래종결일에, 매도인이 제4조 제3항과 제6조 제3항(부동산거래종결일 이전에 이행되어야 하는 의무에 한한다)에 정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금은 부동산 매매대금과 주식 매매대금의 합계액(다음부터 '총 매매대금'이라 한다)에서 대상 부동산 중 각 부동산별 부동산 매매대금과 각 주식 매도인별 주식 매매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부동산 매매대금과 주식 매매대금 중 각 일부의 지급에 충당된다.

(c) 총 매매대금에서 계약금을 공제한 금액은 별지 4.5(c)에 적힌 대로 F의 사업 진행 단계별 자금집행 내역에 따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매매대금 정산금액 [별지 4.5(c) 제2항에서 정의된다. 이하 같다]은 (b)호에 적힌 것과 같은 비율로 부동산 매매대금과 주식 매매대금에 안분하여 충당한다. 다만 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한 충당이 완료된 이후에 지급되는 매매대금 정산금액은 전액 주식 매매대금으로 배분된다.

● A은 부동산거래종결 이후 피고 회사의 지정에 따라 F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와의 협의 하에 별지 4.5(c)에 적힌 각 사업 단계별로 지정된 각 이행기한(단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A과 피고 회사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까지 각 사업을 모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4.5(c) 제4항에서 정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않고, A과 원고 사이의 협의를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A이 본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제3항(a)호].

● 매도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계약이 효력을 유지하는 한 피고 회사 또는 F의 이 사건 사업 수행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고, 피고 회사 또는 F가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제6조 제3항(b)호].

● 어느 당사자도 부동산거래종결일 이후에는 본건 부동산 매매를, 주식거래종결일 이후에는 본건 주식 매매를 해제할 수 없다[제9조 제1항 (a)호 단서].

(6) 그런데 이 사건 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별지 4.5(c)(다음부터 '이 사건 대금 지급 특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① 원고 측은 이 사건 용역업무를 약정된 기한까지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②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업무의 진행 단계별로 약정된 집행시기에 정산금(이 사건 계쟁 부동산과 주식의 매매대금에서 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과 원고 측의 이 사건 용역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가 합산된 돈이다)을 5차례에 걸쳐 원고 측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이 사건 대금 지급 특약 제1항에서는 이 사건 용역업무의 진행 단계별로 지급되어야 할 정산금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다(아래 표 중 실비용으로 적힌 금액은 피고 회사가 해당 항목의 비용으로 실제 지출될 것으로 예상한 한도이다).

계약금		4,700,000,000원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민원 해결	2011년 12월 말	2,000,000,000원 (실비용 1,500,000,000원)	민원합의서 작성 시
인·허가	2012년 9월 말	1,500,000,000원	결정 고시일
국유지 매수	2013년 3월 말	(실비용 500,000,000원)	등기 완료 시

계약금		4,700,000,000원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사유지 매입	6,200,000,000원	매입계약 완료 시	
유보금		4,300,000,000원	상기 업무 종료 시
합계		1,800,000,000원	
		20,500,000,000원	

(7) 그 밖에 이 사건 대금 지급 특약에는 아래와 같은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 유보금 항목의 잔액과 정산 차액을 합하여 '매매대금 정산금액'이라 한다. 유보금 항목의 잔액은 이 사건 용역업무 종료 시에 최종 정산한다(제2항).

●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① A이 이 사건 사업의 진행 도중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② A과 원고 사이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빚어진다고 피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③ A에 의한 이 사건 사업 수행이 더 이상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피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다음부터 통칭하여 '용역업무 중단 사유'라 한다)에는 매수인은 매도인 전원에 대하여 매매대금 정산금액의 지급 또는 정산의무를 면한다. 다만 용역업무 중단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이미 정산 지급이 완료된 매매대금 정산 금액 부분은 매도인에게 귀속하고, 매수인이 이 부분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없다(제4항).

다. 이 사건 계약의 이행

(1) ① 이 사건 계쟁 부동산 중 원고 소유인 16필지 토지에 관하여는 2011. 7. 27. 피고 회사 또는 피고 E 앞으로, ② F 소유인 7필지 토지와 1동 건물에 관하여는 2013. 3. 29. 피고 회사 앞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또 원고와 A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계쟁 주식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피고들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들이 2011. 2. 14. 원고 측에 지급한 이행보증금 4,700,000,000원은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5항 (a)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계쟁 부동산과 주식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전환되었다. 또 피고들은 2012. 2. 10. 원고 측에 875,300,000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A 및 피고들의 분쟁 경과

(1) A은 2012. 8. 30.경 피고 회사에 산지전용 타당성 평가와 이 사건 사업부지 인근의 민원 해결을 위한 협의 진행 등을 이유로 들면서 이 사건 용역업무 중 ① '민원 해결' 업무의 이행기한을 '2012년 12월 말까지'로, ② '인·허가' 업무의 이행기한을 '2013년 12월 말까지'로, ③ '국유지 매수 및 사유지 매입' 업무의 이행기한을 '2014년 6월 말'까지로 각각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2012. 11. 30.경 A에게 '이 사건 사업 시행의 적기를 놓쳐 사업 시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으니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이 사건 용역업무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2) 그 후로도 원고와 A 및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용역업무의 이행기한 연장 등 이 사건 계약 중 일부 조항의 변경 여부, 이 사건 계쟁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등에 관하여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다. 그러자 원고와 A은 2013. 7. 18.경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계약이 종결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대금 지급 특약에 따른 정산금 9,900,00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2013. 8. 23.경 원고와 A에게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고 2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 용역업무 중 초기 단계의 업무('민원 해결'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조차 완료되지 않았고 향후 상당한 시간 내에 초기 단계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완료될 가능성도 희박하므로,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 2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 일체를 종결 처리한다.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와 A의 정산금 청구를 납득할 수 없고, 이 사건 대금 지급 특약 등 계약 조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처럼 어떠한 정산금 지급의무도 남아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인정 근거] 기록상 분명하거나 다툼 없음, 갑 제1~14, 18, 19, 2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갑 제17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계쟁 부동산과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과 이 사건 용역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이 혼합된 계약이다. 비록 이 사건 계약 중 도급계약 부분은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무효가 되었으나, 민법 제137조에서 규정한 일부 무효의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 계쟁 부동산과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 부분은 유효하다. 그리고 원고, A 및 F는 매매 목적물인 이 사건 계쟁 부동산과 주식의

소유권을 이미 피고들에게 이전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민법상 조합 또는 경제적 공동체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연대채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부동산과 주식의 매매대금 중 미지급된 838,302,544원(=원고 소유 부동산의 매매대금 393,700,000원 + F 소유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원고가 보유한 F에 대한 지분 상당액 1,099,045,376원 + 원고 소유 주식의 매매대금 755,000,000원 - 피고들이 지급한 계약금 4,700,000,000원 중 원고 몫 1,409,436,000원)5)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 A 및 F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매매 목적물인 이 사건 계쟁 부동산과 주식의 소유권을 피고들에게 이전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매도인인 원고로서는 매수인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쟁 부동산과 주식의 매매대금에서 계약금 4,7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 중 원고 몫 상당액(다음부터 '원고 주장의 매매대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법원이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계약에서는 이 사건 계쟁 부동산과 주식의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그 매매대금의 정산 지급은 이 사건 대금 지급 특약에서 정하는 단계별 자금집행 내역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 측에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2항, 제5항 (c)호]. ② 이 사건 대금 지급 특약에서는, 이 사건 용역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용역업무별 이행기한을 정하면서 피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계쟁 부동산과 주식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이 사건 용역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와 함께 이 사건 용역업무가 진행되는 단계별로 나누어 원고 측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계쟁 부동산과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 주장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용역업무가 이행된 사실(이 사건 용역업무가 전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의 정도)을 증명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용역업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금 지급 특약이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잔존 매매대금을 포함한 정산금의 지급에 관한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 제5항 (c)호 및 이 사건 대금 지급 특약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대금 지급 특약 제1항에서 이 사건 용역업무의 진행 단계별로 지급되어야 할 정산금의 산정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금 지급 특약이 이 사건에 적용될 경우 이 사건 용역업무의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 주장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2) 나아가 이 법원이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대금 지급 특약 제4항에서는, A에 의한 이 사건 사업 수행이 더 이상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피고 회사가 인정하는 등 '용역업무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 전원에 대하여 매매대금 정산금액의 지급 또는 정산 의무를 면하고, 이미 정산 지급이 완료된 매매대금은 매도인에게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용역업무의 이행기한은 A과 피고 회사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이 사건 계약 제6조 제3항 (a)호 본문]. 그러나 A과 피고 회사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 사건 용역업무의 이행기한은 연장되지 못하였다. ③ 원고와 A은 이 사건 용역업무를 더 이상 이행하지 않은 채 2013. 7. 18.경(이 사건 용역업무 중 마지막 단계의 업무인 '국유지 매수, 사유지 매입'의 이행기한인 '2013. 3. 31.' 이후이다)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계약이 종결되었음을 전제로 정산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자 피고 회사는 2013. 8. 23.경 원고와 A에게 '이 사건 용역업무 중 초기 단계의 업무조차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 일체를 종결 처리한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금 지급 특약 등에 의하여 어떠한 정산금 지급의무도 없다.'고 통보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의 경우 늦어도 피고 회사의 2013. 8. 23.자 통보에 의하여 이 사건 대금 지급 특약 제4항에서 규정한 '용역업무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옳다. 그 결과 매도인인 원고 측이 매수인인 피고들로부터 이미 받은 5,575,300,000원(= 계약금 4,700,000,000원 + 2012. 2. 10. 지급된 875,300,000원)은 원고 측에 그대로 귀속되는 반면, 피고들은 원고 측에 이 사건 계쟁

부동산과 주식의 잔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면하게 되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제1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원고의 청구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은 제외한다)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조한창

판사손철우

판사이재신

- 1) 원고는 2019. 8. 22.자 준비서면에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금전 채무가 연대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2)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과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정산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음을 이유로 미지급된 정산금 중 1,4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일부 청구를 하였는데, 그 정산금에는 매매대금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는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청구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공격방법을 변경하였다고 판단된다(원고 스스로도 이 법원의 제1차 준비기일에서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은 공격방법을 변경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3) 2019. 4. 10.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 중 예비적 항소취지에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을 구하는 돈의 원금이 '420,000,000원'으로 적혀 있다. 그러나 2019. 5. 31.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의 '변경 전 항소취지' 중 예비적 항소취지에 적힌 원금의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이는 '838,302,544원'의 오기로 보인다.
- 4) 원래 원고는 피고 회사의 관리인 D과 피고 E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 회사는 제1심 소송계속 중 회생절차가 종결되자 2018. 12. 6. D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 5) 계산상 838,309,376원이 되나 원고 주장에 따른다.